

# 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15,659,658	18,469,790
일반회계	589,354,023	17,680,621
특별회계	26,305,635	789,169
기타특별회계	26,305,635	789,169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195,607	35,868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912,017	27,361
주차장특별회계	8,368,773	251,063
수질개선특별회계	15,829,238	474,877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,2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